

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(안)

의안번호	533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3. 10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성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
-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
-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조례제정의 목적 (안 제1조)
-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(안 제4조)
- 수탁기관의 선정(안 제5조)
-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(안 제6조)
 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6인이상 9인이하
 -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
 - 위원은 관계직원 및 군의원 또는 당해 사무에 관련 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
 -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후 자동 해산
- 협약체결등(안 제9조)
- 지휘감독(안제10조)

3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 (사무의 위임등)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- 표준안시달(경남 자치 12200-10006('99. 1. 5))

4. 본 문 : 붙임 참조

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고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③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,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위원회) ①수탁기관을 심사·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행정과장, 위탁대상사무 소관과장, 군의원 또는 당해사무에 관련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, 수탁기관 심사·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사무의 처리)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,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.

제9조(협약체결 등)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협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, 위·수탁내용, 위·수탁기간,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0조(지휘·감독)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수 있다.

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1조(사무편람)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절차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